

의안번호	2200897
의 퇴 인	임이자 의원
회 답 일	2024. 7. 5.
추 계 번호	24B1186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60억원(연평균 32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(안 제12조의3)	16,000	-	-	-	-	16,000	3,200

주: 1. 수도사업자가 아닌 8개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모두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상황에 따라 추계금액 증감 가능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3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책무)	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·<u>상수도조합</u>¹⁾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함(제3항)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,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
1) 개정안 제3조(정의) 제25호. “상수도조합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.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제12조(수도사업의 경영 원칙) 제1항	수도사업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, <u>상수도조합</u> 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의무규정
	안 제75조(국고 보조 등) 제2항 신설	국가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2조의3(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) 신설	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(이하 “통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또한 같음(제1항) 1.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. 둘 이상의 시장·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. 다만,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함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의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을 수립함(제2항)	
		수도사업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3항) 1.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2.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3.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4.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5.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 6.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2조(책무)	×	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지원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,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
2	제12조(수도사업의 경영 원칙) 제1항	×	전국의 1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30만명 이하의 영세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124개로, 영세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경영에 한계가 존재하여 상수도조합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, 향후 전국의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조합이 설립될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, 이에 대한 국고보조 여부 및 규모도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 곤란
	안 제75조(국고 보조 등) 제2항 신설		
3	안 제12조의3(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) 신설	○	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(안 제12조의3 신설)

-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)가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둘 이상의 시장·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**(통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)**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의 8개 도²⁾의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가정
 - 개정안은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, 「수도법」 상 국가수도기본계획(10년), 수도정비기본계획(10년) 주기를 준용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추계 기간 중 첫해에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가정
- **(통합계획 수립 용역 단가)** 최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서울시,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용역 단가 평균을 참고하여 추계 첫해인 2025년에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단가

(단위: 백만원)

지방자치단체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	집행액
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(2019.5.~2021.3.)	2,692
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(2019.7.~2021.12.)	1,578
부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(2020.4.~2021.12.)	1,980
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(2019.5.~2020.12.)	2,214
평균	2,116

자료: 환경부

- 개정안에 따라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)가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60억원(연평균 32억원)으로 추계됨
 - 8개 도·특별자치도 × 20억원 = 160억원

2)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의 8개 도·특별자치도(경기도, 강원특별자치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)는 현재 수도사업자가 아님

[표 3] 수도권사업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(안 제12조의3)	16,000	-	-	-	-	16,000	3,200

주: 1. 수도권사업자가 아닌 8개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모두 수도권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수도권사업 통합계획 수립 상황에 따라 추계금액 증감 가능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3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수도권사업자가 아닌 8개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모두 수도권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수도권사업 통합계획 수립 상황에 따라 추계금액 증감 가능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